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고단 1204,25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공연음란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고단1204, 251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통신매체이용

음란),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권재호, 김은정(각 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5.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017고단1204)

피고인은 2017. 1. 26. 13:27경 구리시 C아파트 605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한 채, E 검색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9세)의 휴대전화번호로(G) 전화를 걸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나 자지예요", "나 지금 딸치고 있어요" 라는 말을하였다.

2. 공연음란(2017고단2510)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은 2017. 5. 1. 22:50경 구리시 C아파트 6단지 놀이터에서, H(여, 24세) 등 여성 3명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20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내사보고(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및 피해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특정)

# [2017고단2510]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H, I, J의 각 진술서
- 1. 피의자가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45 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및 판시 제2항 범행의 목격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대상범죄에서 제외 되었는데, 2016. 12. 20.자 법률 개정(법률 제14412호)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가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하석찬